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주호영·권영세·곽규택

김승수 · 김도읍 · 장동혁

이헌승 · 구자근 · 이인선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 되지 않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양상임.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제기됨.

이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②(생 략)	第98條(間諜) ①・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③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
	를 위하여 간첩한 자는 5년 이
	<u>상의 징역에 처한다.</u>